

건설업 별칙규정



연재순서

1. 별칙의 종류와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별칙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불이익처분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불이익처분 - 이번호**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상의 별칙

건설산업 관련 법령수는 무려 80여개에 달하고, 행정처벌 또한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법령상의 별칙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본지는 설비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위반 기준 및 처벌 내용을 중심으로 연재한다. [편집자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불이익 처분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가.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의의

부정당업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등의 전과정에서 계약자(연대보증인 포함)에게 부여된 제 의무이행을 위반함으로써 정부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말함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함으로써 정부의 계약상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1.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 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4.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5. 영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6. 영 제92조제1항제4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7.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년 5개월 이상 1년 7개월 미만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나. 삭제 다.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라.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마.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 영 제9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0. 영 제9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1. 영 제9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2. 영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2년 1년 6개월 3개월
13. 영 제9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4. 영 제9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5. 영 제9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6. 영 제92조제1항제14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7. 영 제9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18. 영 제92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9. 영 제92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0. 영 제92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21. 영 제92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3개월 1개월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용”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용”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2. 입찰무효

가.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입찰무효 사유

-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4)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 5)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만,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 6)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 7)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 8)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9)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찰로서 제40조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 10)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만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 11)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 12) 영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입찰 외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나.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

-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는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지정한 입찰대리인이나 변경한 입찰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입찰
-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정한 입찰
- 8)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 9)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 10)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

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 11)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1천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신인도 평가

가. 기본원칙

- 1) 단독입찰은 사전심사 대상자의 신인도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 2)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나.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가)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0	평점 90점 이상인 자	2
	1.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0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5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나)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	-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2.0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사실이 있는 자	-3
	-2.0	과징금부과처분을2회받은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처분을3회이상받은사실이있는자	
(라)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0	평균 환산 재해율 0.4배 이하	2
	1.0	평균 환산 재해율 0.7배 이하	
	0.5	평균 환산 재해율 1.0배 이하	
(마)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① 최근1년동안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사용의무를 위반하여목적외사용금액이 1000만원을초과하거나 사용내역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 자	-1
	-1.0	2회 이상 받은 자	
③ 최근1년동안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위반(지연보고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0.2/ 건	벌금 처분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점까지 부여	-2
(바)부실벌점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1.0	2점 이상 10점 미만	-3
	-2.0	10점 이상 15점 미만	
	-3.0	15점 이상	
(사)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 : 우수	2
	1	B : 양호	
(아)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 최우수	1
	0.5	B : 우수	
(재)기타 ① 최근1년간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사입찰이나계약이행과정에서 허위사실유포나 부당한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 주의 통보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0.5	2회 이상 받은 경우	-1
	-1.0	4회 이상 받은 경우	

다. 시행일 적용기준 특례

심사항목 “재”는 2007. 1. 1. 이후 발생한 사실로 인하여 서면 주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라. 신인도 평가시 유의사항

- 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 나) 1개의 업체가 신인도 평가 시 동일 심사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 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경우는 재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라)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심사항목 “배”는 2년) 이내에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처분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 효력발생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마)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자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의 신인도 평가항목은 그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자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본다.
 - ※ 합병은 합병 후 신설된 업체, 분할은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 사업양수도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 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심사항목 “배”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 사) 심사항목 “라”와 “배-③” 관련 세부 산

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과 통보건수에 따른다.

- 아) 환산 재해율과 평균 환산 재해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환산 재해율의 적용에 있어 2007.7.1부터 2008.6.30까지 입찰 공고되는 공사는 2005년과 2006년 환산 재해율을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최근연도 환산재해율×0.5+최근연도 1년전 환산재해율×0.3+최근연도 2년전 환산재해율×0.2] (단, 최근연도 1년전이나 2년전의 환산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 자) “사”와 “아”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 ①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 ③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